여행조건서(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불분명한 점은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제 1 조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1. 이 여행은 세이부철도주식회사(이하 '당사')가 기획 및 모집하여 실시하는 국내여행이며, 이 여행에 참가하는 고객(이하 '여행자')은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이하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여행계약의 내용 및 조건은 각 코스별로 기재되어 있는 조건 외에 이 여행조건서, 출발 전에 교부하는 최종 여행일정 및 당사 여행업 약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부분에 따릅니다.

제 2 조 신청조건

1. 당사는 다음의 경우 여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및 기타 참가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응모한 여행자수가 모집예정수에 도달한 경우.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단체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가 가진 카드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사의 카드 회원 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는 경우.

(5) 여행자가 폭력조직원, 폭력조직 준구성원, 폭력조직 관계자, 폭력조직 관계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6)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하여 위협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여행자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 또는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원칙적으로 20 세 미만이 단독으로 참가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혼자 참가하는 것은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노인, 신체장애인,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은 그러한 사정을 알리고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 당사의 판단으로 참가를 거절하는 경우와 보호자의 동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3 조　여행 신청방법 및 계약의 성립

1. 당사 소정의 여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다음과 같은 신청비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비는 여행대금 또는 취소료 혹은 위약금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2. 당사는 전화/우편/팩스/인터넷 및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여행계약의 예약을 접수합니다. 이 경우 예약 시점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당사가 예약을 승낙한다고 통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 일째 되는 날까지 신청서와 신청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자로부터 해당 기간 내에 신청비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는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3. 신청비(1 인)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대금	￥10,000 미만	￥10,000 이상 ￥30,000 미만	￥30,000 이상
신청비	￥3,000	￥5,000	￥10,000

4. 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위의 신청비를 수령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당사가 제휴한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로 여행자의 서명없이 여행대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화/우편/팩스/인터넷 및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여행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하 '통신계약'이라고 함). 단, 업무상의 이유, 당사와 제휴 신용카드회사 사이에 무서명 취급 특약을 포함한 가맹점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 등의 이유로 여행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6. 통신계약의 신청에 있어서 여행자는 신청하려고 하는 '여행의 명칭', '출발일' 등과 함께 '카드회사명', '회원번호', '카드유효기간'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통신계약에 의한 여행계약은 전화에 의한 신청의 경우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며, 전자계산기 등의 통신수단에 의한 신청의 경우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가 여행자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7. 통신계약에 의한 여행계약은 당사가 신청을 승낙하는 통지가 여행자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성립합니다. 전화에 의한 신청의 경우는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며 e-mail 등 전자 승낙 통지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는 그 통지가 여행자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8. 통신계약에서 '카드이용일'은 여행자 및 당사가 여행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의 지불 또는 환불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날로 하며 전자의 경우 계약성립일, 후자의 경우 계약해제 신청일입니다.

9. 이 여행에 참가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여행자는 예약신청 시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합니다. 단, 당사가 여행자를 위해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행자 부담으로 합니다.

10. 당사는 여행계약의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일정, 여행서비스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교부합니다. 또한,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계약서면의 교부 대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제공하였을 때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다운로드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파일이 다운로드되지 않은 경우 당사의 통신기기에 기록하여 여행자가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제 4 조 여행대금 지불

1. 여행대금(신청비를 공제한 잔액)은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4 일 전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4 일 전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여행개시일 이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특별한 주석이 없는 경우, 만 12 세 이상은 어른요금, 만 3 세 이상 12 세 미만은 어린이요금입니다.

제 5 조 여행중지의 경우

1 . 참가하는 여행자가 팜플렛에 미리 명시한 최소출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는 여행의 출발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3 일 전에 해당하는 날(당일여행은 3 일 전) 이전에 연락하여 보관하고 있던 여행대금 전액을 되돌려드립니다.

제 6 조 여행대금에 포함되는 것

1 . 여행대금에 포함되는 것은 여행일정에 명시한 운송기관의 운임/요금, 소비세 등 세금과 특별히 명시된 기타 비용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여행자의 사정으로 일부 사용되지 않아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여행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　여행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비, 숙박비 등의 비용 및 추가 음식비 등 개인적 성질의 비용, 그에 따른 세금 및 서비스요금, 규정 초과분의 수하물 요금, 자유행동 중 발생하는 요금, 희망자만 참가하는 옵션플랜(별도요금) 대금 등은 여행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여행계약 내용 및 여행대금의 변경

1 .　당사는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및 운송기관의 지연 등, 기타 당사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미리 신속하게 해당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및 기타 여행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 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용하는 운송기관의 운임/요금이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여행대금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크게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의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증액의 경우는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15 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액의 경우는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운임/요금의 감소액만큼 여행대금을 감액합니다. 운송/숙박기관의 이용인원에 따라 여행대금이 다르다는 것이 계약서면에 기재된 경우에 있어서 여행계약 성립 후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해당 이용인원이 변경된 경우는 계약서면에 기재된 바에 따라 여행대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여행자의 교체

1.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지위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소정의 용지에 소정 사항을 기입한 후 소정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는 당사 및 관계기관의 승낙이 있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이후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제 3 자는 여행자의 해당 여행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 여행자에 의한 계약의 해약 및 환불

1. 여행자는 언제든지 다음의 취소료를 지불하고 여행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통신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도 여행자의 제휴회사의 카드에 서명없이 해약할 수 있습니다.
2. 이 여행의 취소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일		취소료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21 일째 이전(당일여행은 11 일째)의 해약	무료
	20 일(당일여행은 10 일째)～8 일째의 해약	여행대금의 20%
	7 일～2 일 전의 해약	여행대금의 30%
여행개시일 전날의 해약		여행대금의 40%
여행개시일 당일 해약		여행대금의 50%
여행개시 후의 해약 또는 무연락 노쇼(no show)		여행대금의 100%

본 표의 적요에 있어서 '여행개시 후'라 함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 2 조 제 3 항에 규정된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을 개시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3. 여행자의 사정으로 신청한 코스 및 출발일을 취소하고 다시 다른 코스 및 출발일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신청한 인원에서 일부 인원을 취소하는 경우도 여행대금에 대하여 1 인당 전항의 취소료의 대상이 됩니다. 1 건당 수수료로 ¥220 을 받습니다.

4. 전항에도 불구하고 여행자는 다음의 경우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에 의하여 여행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여행대금이 증액된 경우.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및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큰 경우.

(4)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의 기일까지 확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5) 당사에 의하여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5.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여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당사가 그 취지를 알린 경우에는, 전항에 관계없이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여행서비스를 수령할 수 없게 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수령할 수 없게 된 부분에 관련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취소료, 위약금 및 이미 지불하였거나 앞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기타 비용에 관련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제 11 조　당사에 의한 여행계약의 해제【여행개시 전】

1.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에게 설명한 후 여행개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수한 여행대금(혹은 신청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1) 여행자가 당사에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및 기타 참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여행자가 병이나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및 기타 사유로 해당 여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4) 여행자가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5) 참가인원이 코스별로 규정한 최소출발인원에 미달한 경우.

(6)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 있어서 필요한 강설량 등의 여행실시 조건이면서 계약체결 시에 명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매우 큰 경우.

(7)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및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큰 경우.

(8)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가 가진 신용카드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사의 카드약관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된 경우.

(9) 여행자가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에서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지정한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불할 수 없을 때는 해당 기일의 다음날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규정의 취소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본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제 5 호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13 일째(당일여행은 3 일째) 되는 날 이전에 여행을 중지한다는 취지를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12 조 당사에 의한 여행계약의 해제【여행개시 후】

1.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여행개시 후라도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한 후 여행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여행자가 병이나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여행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가이드 및 기타 관계자에 의한 당사의 지시를 위배하거나 이러한 자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에 따라 단체여행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해당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방해하는 경우.

(3) 여행자가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에서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및 기타 당사가 관여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해진 경우.

2. 당사가 여행개시 후 여행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당사와 여행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만 소멸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에 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자가 아직 제공받지 않은 여행서비스 부분의 금액에서 취소료, 위약금 및 이미 지불하였거나 앞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기타 비용의 금액을 공제한 것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제 13 조　여행대금의 환불

1. 당사는 여행자에게 환불하여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였을 때, 여행개시 전 해제에 따른 환불에 있어서는 해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 일 이내에 감액, 여행개시 후 해제에 따른 환불에 있어서는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 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여행자에게 환불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제휴사의 카드약관에 따라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여행개시 전 해제에 따른 환불에 있어서는 해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 일 이내에 감액, 여행개시 후 해제에 따른 환불에 있어서는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 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환불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여행자에 해당 통지를 한 날을 카드이용일로 합니다.
3. 전 2 항은 여행자 또는 당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14 조　계약해제 후의 귀가 지원

1 . 당사는 제 12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개시 후 여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여행자의 요구에 따라 여행자가 여행의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여행서비스의 준비를 담당합니다. 단,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15 조　단체/그룹 계약

1 . 당사는 같은 여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단체/그룹)의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라 함)가 신청한 여행계약의 체결에 관해서는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의 여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단체/그룹에 관련된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는 해당 계약책임자와의 사이에 실시합니다.

(2) 계약책임자는 당사가 정한 날까지 구성자의 명부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하여 현재 지고 있거나 앞으로 질 것이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이 여행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여행개시 후에 있어서는 미리 계약책임자가 선임하여 이 여행에 실제로 참가하는 구성자를 계약책임자로 간주합니다.

제 16 조 여정관리

1. 당사는 여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 당사가 여행자와 이와 다른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여행 중 여행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계약에 따른 여행서비스를 확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전호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서비스를 준비할 것. 이 때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여행일정이 당초의 여행일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 또한,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여행서비스가 당초의 여행서비스와 같은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부터 여행종료까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합니다.
3. 당사는 여행 중 여행자가 질병, 상해 등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여행자는 해당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 17 조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당사 또는 준비 대행자(일본 내에 혹은 국외의 다른 여행업자, 준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사가 준비를 대행시킨 자)가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발생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 년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및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준비 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수하물에 관한 배상책임은 손해발생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 일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하여 여행자 1 인당 15 만엔을 한도로 배상합니다(당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 18 조 여행자의 책임

1. 당사는 여행자의 고의, 과실 또는 법령 혹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 19 조 특별보상

1. 당사는 제 1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책임이 발생하는가를 불문하고 당사 여행업 약관 특별보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가 여행참가 중에 그 생명, 신체 또는 수하물에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 전항의 손해에 대하여 당사가 제 1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는 때에는 그 책임에 따라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사가 지불하여야 할 전항의 보상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3. 전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보상금 지불의무는 당사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전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는 보상금을 포함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삭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의 여행참가 중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여행대금을 수수하여 당사가 실시하는 여행계약에 관해서는 주된 여행계약 내용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제 20 조 여정보증

1. 당사는 다음 표 상단에 명시된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다음 각 호에 명시된 변경(운송/숙박기관 등이 해당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및 기타 여러 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에 의한 것을 제외함)을 제외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행대금에 동표 하단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변경보상금을 여행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 일 이내에 지불합니다. 다만, 해당 변경에 대하여 당사에 제 1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한 변경

① 천재지변

② 전란

③ 폭동

④ 관공서의 명령

⑤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⑥ 당초의 운행계획에 의하지 않는 운송서비스의 제공

⑦ 여행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제 10 조 및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해당 해제된 부분에 관한 변경

2. 당사가 지불하여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1 명에 대하여 여행계약 1 건의 여행대금에 15% 이상의 당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여행자 1 명에 대하여 여행계약 1 건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이 1,000 엔 미만일 때는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3. 당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보상금을 지불한 후 해당 변경에 대하여 당사에 제 1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에는 여행자는 해당 변경에 따른 변경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하여야 할 변경보상금을 상쇄한 잔액을 지불합니다.

제 21 조 규정 외 사항

이 여행조건서에 규정된 사항과 당사 여행업 약관에 정한 사항이 다를 경우에는 여행조건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변경보상금 지불이 필요한 변경	1 건당 비율(%)	
	여행개시 전	여행개시 후
1.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개시일 또는 여행종료일의 변경	1.5	3.0
2. 계약서면에 기재된 입장하는 관광지(레스토랑을 포함) 또는 관광시설 및 기타 여행의 목적지 변경	1.0	2.0
3. 계약서면에 기재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보다 낮은 요금의 것으로 변경(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요금의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된 등급 및 설비를 밑도는 경우에 한함)	1.0	2.0
4. 계약서면에 기재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0	2.0
5. 계약서면에 기재된 일본 내 여행개시 장소인 공항 또는 여행종료지인 공항의 다른 항공편으로의 변경	1.0	2.0

6. 계약서면에 기재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7. 계약서면에 기재된 숙박기관의 객실의 종류, 설비, 경관 및 기타 객실의 조건의 변경	1.0	2.0
8. 전 각 호에 기재된 변경 중 계약서면의 여행상품 제목 안에 기재가 있었던 사항의 변경	2.5	5.0
주 1	‘여행개시 전’이라 함은 해당 변경에 관하여 여행개시일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하며, ‘여행개시 후’라 함은 해당 변경에 관하여 여행개시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 2	확정서면이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서면’을 ‘확정서면’으로 해석하여 본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면의 기재내용과 확정서면의 기재내용과의 사이 또는 확정서면의 기재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서비스의 내용과의 사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각각의 변경에 있어서 1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3	3. 혹은 4.에 기재된 변경과 관련된 운송기관이 숙박설비의 이용을 동반하는 것인 경우에는 1 박당 1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4	4.에 기재된 운송기관의 회사명의 변경에 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기재된 것보다 높은 것으로의 변경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5	4. 또는 6. 혹은 7.에 기재된 변경이 1 승차선 등 또는 1 박의 안에서 복수 발생한 경우라도 1 승차선 등 또는 1 박당 1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6	8.에 기재된 변경에 관해서는 1.에서 7.까지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8.에 따릅니다.

제 22 조 가이드 등 업무에 관하여

1 . 이 여행에 가이드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쿠폰의 제출 등 여행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여행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단, 일부 단체모집 코스에서 가이드가 동행하는 경우는 팜플렛에 명시합니다.

제 23 조 최소출발인원

1 . 최소출발인원은 코스에 따라 다르므로 팜플렛에 명시합니다.

제 24 조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1. 당사는 여행계약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세이부철도주식회사 개인정보보호방침(https://www.seiburailway.jp/privacy/)에 따라 여행자와 연락을 위해 이용하는 것 외에 이 여행에 있어서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준비와 그 서비스의 수령을 위한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합니다.
2. 전항 외에 당사에서는 ① 취급상품, 서비스 등의 안내 ② 의견, 설문조사 요청 ③ 통계자료의 작성 등에 여행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기타

1. 출발 당일, 여행회원권, 승차권 등, 여정안내서는 반드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2. 각 코스에는 규정의 집합/출발 시간이 있습니다. 신청한 코스의 집합/출발 시간에는 늦지 않게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집합/출발 시간에 늦어지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여행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4. 여행조건의 기준일 이 여행조건은 2020 년 4 월 1 일을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 손해보험 가입 권장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게 여행자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행기획/실시

사이타마현 지사 등록 여행업 제 2-1184 호

세이부철도주식회사

〒359-8520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구스노키다이 1-11-1

TEL(04) 2926-3751

一般社団法人 全国旅行業協会 정회원

종합 여행업무 취급 관리자　시미즈 켄이치